

● 산업통상부공고제2026-016호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2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,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신고시 관리기관이 현장 확인 외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문화·체육시설 및 편의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을 명시하고, 문화·체육시설의 경우 종업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근 입주기업체 종업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함. (안 제2조제7호)
- 나. 제조업체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시공하기 위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함. (안 제2조제8호라목)
- 다.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신고시 관리기관이 현장 확인 외 영상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. (안 제9조의2제4항)
- 라. 산업·기술·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범위를 확대함. (안 별표5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
- 전자우편 : kikikmg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73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r.go.kr>) 정보 - 국회·법령 -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(044-203-440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